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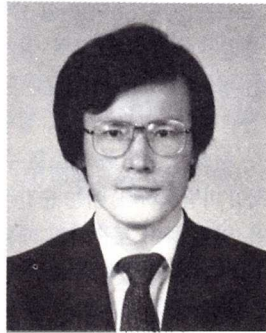
보험계약의 변경

1. 사고의 개요

1988년 7월 19일 보험계약자 S와 보험자 H 사이에 대구시 서구 비산6동에 소재하는 W상사내에 있는 동산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은 5천만원, 보험기간은 1988년 7월 19일부터 1989년 5월 9일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후 1988년 12월 31일 본 건 분쟁조정신청인인 L이 경영하고 있는 위 W상사 원단창고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L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건물 2백여평과 그안에 있던 기계·집기시설·동산 등이 전소되었는데 S소유분 동산손해는 3백여만원, S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손해는 9천2백여만원 정도에 이르렀다.

본 건 사고에 대해 보험자 H가 S소유의 동산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동산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거부하자 분쟁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순 관
(보험감독원 조정 2 국 조정역)

2. 당사자 주장

신청인 L은 S의 임가공 하청의뢰를 받기 위하여 S앞으로 보험을 가입한 바 있는데, S소유분에 대한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동 화재보험을 W상사 경영인 L앞으로 명의변경해줄 것을 보험자 H에 소속된 K대리점에 요청한 바 있고, 1988년 11월경 위 K대리점에서 보험변경신청서를 신청인에게 가져온 것을 신청인은 S앞으로 발송한 바 있으나 S가 회신을 미루던 중 독촉에 의해 1988년 12월 20일 보험변경 승인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에

대한 이전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온 바 위 서류는 보험계약자 S에게 1988년 11월 결제가 나서 발급되었으나 신청인에게 도착이 늦어진 바, S앞으로 된 화재보험증권을 신청인 앞으로 명의변경하는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본 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보험자 H는 신청인 S에게서 1988년 11월말 결제가 나서 1988년 12월 20일 보험변경승인신청서, 인감증명서 등을 신청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나, S의 인장날인대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기 제서류는 1988년 12월 21일 발급되었고 K대리점에 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도착한 것은 화재사고 익일인 1988년 12월 22일 15시 경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험계약자 및 소유자변경은 보험변경승인신청서에 명의변경 및 기타의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증권과 함께 대리점 또는 영업소를 경유하여 지점 업무과에 제출되어야 유효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변경에 필요한

관련 서류도 갖추어지지 않고 사고시점 이후에 대리점에 도착시킨 변경서류를 마치 화재사고 이전에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S소유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내용

본 건 분쟁사안을 심의한 손해보험분쟁심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 L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기각판정을 하였다.

「……본 건 사고발생 이전에 신청인의 계약내용변경요청에 의해 보험자 H소속 K대리점이 화재보험변경승인신청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거나 위 대리점이 여러차례 신청인에게 적법한 변경서류제출을 독촉하는 등 본 건 화재보험계약의 내용변경을 위해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대리점과 본 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위 신청인과의 변경논의 및 약속만으로는 아무런 변경효력이 발생하지를 않고 계약당사자이자 피보험자인 S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승인이 이루어져야 변경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본 건 화재보험의 계약내용변경과 관련하여 본 건 사고이전에 S로부터 유효한 계약내용변경신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니, 본 건 보험계약은 본 건 화재발생시까지 계약체결 당시의 내용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나 보험목적물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평설

손해보험대리점의 권한은 보통 대리점 계약서에 의해 정해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다만 보험계약 변경권한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그러나 대리점계약서나 보험회사의 개별적 수권행위에 의해 명백히 보험계약이나 보통보험약관의 변경권한이 인정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대리인이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가 적용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호받을 여지가 많을 것이다.

최근 대법원판례(대법원 1989년 3월 28일 선고, 88다4645판결)에 의하면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내지 보험의판원이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보통보험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1985년 11월 26일 선고, 84다카2543판결에서는 당사자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판시하고 있음) 동 판례는 학설상의 논의와는 달리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이나 약관변경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본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K보험대

리점의 보험계약변경권의 유무가 불분명한 점은 있지만 대법원판례의 경향 및 표현대리의 법리 등에 비추어 만약 본 건 보험계약의 변경이 보험계약자 S나 동 보험계약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신청인 L과 K보험대리점사이에 이루어졌다면 보험계약의 내용변경에 따라 신청인은 본 건 화재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이점 보험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해당대리점이나 영업소를 경유하여 지점업무에 제출하여야 유효하다는 보험자 L의 주장은 사안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하겠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 본 건 사고이전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S와 K대리점사이에 동 계약자의 적법한 계약변경신청에 따른 K대리점이나 지점의 승락이라는 합법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본 건 사고 후에야 보험계약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K대리점에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어 기존계약의 내용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약서나 보험증권상으로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S로 되어 있으나 설명 신청인 L의 주장대로 L이 S를 위해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계약의 성질상 일단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화재사고 당시 S의 소유분이 잔존하고 있어 S의 피보험이익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자는 쉽사리 임의로 피보험자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